

특별공급(다자녀 가구) 구비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원본 및 **입주자 모집공고일(21년 2월 19일)** 이후 날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추가 (해당자)			
○		인감증명서	본인	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 - 본인발급용」로 대체 가능
○		신분증(사본)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, 제 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 기간 : 출생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공고일 현재)
○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	본인	견본주택에 비치,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
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세대원	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을 위해 제출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)
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○		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: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청약 신청자가 [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]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한 경우
○	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"로 발급 재혼 가정의 자녀(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)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자녀 :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)
○		출산이행 확인각서		견본주택에 비치 (임신한 경우)
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		입양의 경우
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,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, 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
※ 계약구비서류(인감증명서, 인감도장)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,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대리인 계약 시 본인 계약 시 필요 서류 일체와 계약자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추가1통/본인발급용)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도장, 신청 위임장(견본주택비치)이 필요합니다.

※ 당첨자 서류 적격 검수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상기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/ 상기 사항과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이 우선합니다.